



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대관운영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교육장 대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시간) ① 교육장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최소 이용시간은 1시간 이상이며, 최대 이용시간은 8시간이다. 1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때에도 1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,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으로 포함한다.

② 교육장 대관 및 이용시간은 평일 일과시간 내(09:00 ~ 18:00 사이)이며, 야간 및 주말 대관은 불가하다.

제3조(사용신청) ① 교육장 사용신청은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와 사회복지교육장(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 포함)을 우선한다.

②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<서식> 교육장사용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교육장사용신청은 사용일(교육장 사용 시작일)의 전월 1일 09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글독스로 제출한다. * 예) 11월 5일 대관 → 10월 1일 09시부터 접수

제4조(사용승인) ① 협회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동일한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으로 2건 이상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회원 및 회비 단체납부기관을 우선한다.

③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신청자를 우선한다.

④ 협회는 필요 시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는 부속 설비의 범위와 사용기간 및 교육장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장물 등의 설치) ① 행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장물 또는 장치는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사용자가 사용 종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회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③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는 제외하고, 사용자의 귀책사유(고의·과실 포함)로 발생한 훼손이나 변형은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가 직접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④ 외부 음성장치(스피커 등) 및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 상영 장치 등은 금지한다.

제6조(사용요금) ① 교육장 사용요금은 <별표>와 같다.

② 협회로부터 교육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(이하 “사용자“라 한다)는 교육장 사용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장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협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사용자가 납부기일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추후 재대관 시 거부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요금의 감면 등) ① 회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70%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회비 단체납부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50%를 감면할 수 있다.

③ 사회복지교육장이 사회복지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40%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협회와 공동으로 주최·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⑤ 단, 별도의 참가비 등을 받아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·교육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.

제8조(사용요금의 반환(환불)) ① 협회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요금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반환(환불)한다.

② 다음 각 호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
2.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 철회 시 전액 반환
3.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철회 시 50% 반환
4. 사용당일 취소 시 반환불가

제9조(사용 제재조치) ① 교육장 목적이 공공질서·미풍양속 해침 또는 협회 목적과 불일치 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사용 중이더라도 즉시 취소할 수 있다.

② 협회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할 경우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③ 교육장 인근 회사 등으로부터 민원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 천재지변 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.

⑤ 제재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2년간 대여 불가하다.

제10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교육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협회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·전대할 수 없다.

③ 뚜껑이 있는 물 등 음료 및 가벼운 다과 취식은 허용하나, 냄새가 나는 음식 등의 취식을 금한다.

④ 교육장 대관 및 사용 후 기존 시설물 및 기자재 정리, 바닥청소, 배출된 쓰레기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.

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한다.

1. 심각한 질병(질병관리청 2~4급 감염 등)
2.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행동이 곤란한 상태의 사람
3. 폭발성·인화성 물질, 부식성 화학물질, 칼·총기류 등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
4.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·공포·위협을 줄 수 있거나 교육장 안전 유지가 곤란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자

제11조(배상책임) ① 사용자가 협회 승인 하에 설치한 교육장 시설물 또는 장치가 훼손되는 경우, 협회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②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(사용 취소·정지 등)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협회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③ 사용자가 본 지침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·과실로 교육장을 훼손하거나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, 사용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④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협회의 요구를 이행하거나 협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육장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책임한계를 정한다.

제12조(미규정 사항에 대한 결정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협회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정한다.